

『구미시농공자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4일

나. 발 의 자 : 안장환, 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, 김정곤, 박교상
윤영철, 윤종호, 임춘구, 정근수, 한성희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2월 12일

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 장 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, 용어정리, 오·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「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」⇒
「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」

○ 상위법 변경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8조제2항, 안 제12조, 안 제27조)

「수질환경보전법」, 「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」, 「건설업법」⇒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○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(제명, 안 제1조~제12조, 안 제14조~제17조, 안 제19~제24조, 안 제26~27조, 안 제29조, 안 제31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○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○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서식[별표 1~3, 별지 1~6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안 경 우

□ 본 『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은

- 당초의 조례 제정 근거 법률인 「수질환경보전법」이 폐지되고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, 용어 정리, 기타 오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